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폐기물분석기관 등의 방치폐기물 지도점검 신설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22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분석기관·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지도점검 신설	2
※ 참고자료 : 불법 방치폐기물 적발 및 처리현황	8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1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신고자가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 톤에 달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폐기물분석기관·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지도점검 신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및 제68조제2항제10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 ⑫ (생략) <u><신설></u>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u>
제68조(과태료) ① (생략)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2의4. (생략) ③·④ (생략)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40조제13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11. ~ 12의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②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규정을 두고 있으며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 또는 폐업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하거나 직접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²⁾.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 8. 3.>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방치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³⁾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⁴⁾이 방치폐기물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불법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저지하고 효과적인 방치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불법 방치폐기물 적발 현황: 2020~2024년]

(단위: 만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당해	12	2.1	2.79	1.15	0.13
누계	115.83	117.93	120.72	121.87	122.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전문기관을 통한 지도·점검 근거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건설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 8. 3.>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4) 「폐기물관리법」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⁵⁾에서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지도·점검을 수행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방치폐기물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현재에도 조합원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현장지도·감독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행 주체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현황]

구분	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보건환경연구원 -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주)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등 41개 기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둘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방치폐기물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협회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있을 때 즉시 통보할 것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 받은 사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⁶⁾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므로, 확인된 위반 사항의 통보 및 조치 이행 등 절차적 내용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제재조항을 통해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⁷⁾을 고려할 때 과태료의 수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에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주체 별로 자의적인 해석·집행이 가능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도점검 대상 범위, 항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 지도·점검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⁸⁾.

문 의 처
02)6788-5536

8)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가 공제조합의 업무이며 이를 위해 분담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불법 방치폐기물 적발 및 처리현황

□ 불법 방치폐기물 적발 및 처리 현황

(단위 : 만톤)

구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발생	122.0	93.73	10.06	11.99	2.16	2.79	1.16	0.13
처리	102.3	89.71	6.81	3.29	1.87	0.41	0.26	0.02
잔량	19.7	4.02	3.25	8.7	0.29	2.38	0.9	0.11
처리율 (%)	83.9	95.7	67.7	27.4	86.6	14.7	22.4	15.4

□ 최근 5년 시·도별 불법 방치폐기물 적발 현황

(단위 : 건, 만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발생량	건수	발생량	건수	발생량	건수	발생량	건수	발생량
합계	17	11.99	10	2.16	8	2.79	9	1.16	7	0.13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	-	-	-
대구	-	-	1	0.05	2	0.25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1	0.04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	-	-	-	1	0.19	1	0.65	-	-
세종	-	-	-	-	-	-	-	-	-	-
경기	7	1.62	2	0.22	1	0.35	1	0.03	1	0.02
강원	-	-	-	-	-	-	-	-	-	-
충북	1	0.05	-	-	2	0.02	1	0.08	-	-
충남	-	-	1	0.06	1	1.89	1	0.01	1	0.01
전북	1	0.6	-	-	1	0.09	-	-	2	0.01
전남	-	-	-	-	-	-	2	0.15	1	0.08
경북	5	1.44	4	1.73	-	-	3	0.24	-	-
경남	3	8.28	1	0.06	-	-	-	-	2	0.01
제주	-	-	-	-	-	-	-	-	-	-